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631호 2021. 11. 01.(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1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7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0번길 19-8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별도 열람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1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9-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0번길 19-8 (검암동)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4-1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29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6-4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66번길 30 (청라동)	20190429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66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99-7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기술로 72 (청라동)	20191223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0-7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기술로 215 (청라동)	20191223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4-3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10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	(주)엘팜 인천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1-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93 (왕길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87-1 (왕길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서인천유동삼가
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87 (왕길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서인천유동삼가
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69-10 (왕길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62번길 6-1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10 (검암동)	건물말소	20090922	심아풀이 많아 심아고개로 불렀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22번길 12-7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22번길 12-5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22번길 12-1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16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신진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16-1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신진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57 (당하동)	건물말소	20171025	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 3,05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2번길 32-7 (당하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6 (가좌동)	건물말소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D동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80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명 : 인천검단지구 AB18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인천검단2차피에프브이 외 5인 (대표 이상호, 양미영)

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인천검단 2차피에프브이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이상호 양미영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주식회사 플러스리더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유영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주식회사 영우홀딩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허만공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제이아이건설 (주)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김경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제이제이건설(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조태울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광민토건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1길 8-1	류재선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8블록
- 나. 대지면적 : 90,709㎡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13,503.0812㎡ (지하 2층, 지상 29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17개동 1,7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개동
- 마. 사업비 : 862,273,759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22.01.01. ~ 2024.12.31.

5.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제 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913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1. 11. 1. ~ 2021. 11. 15.(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2고4531 등 5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3, FAX 032-560-2793)		

###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3)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12고4531	C200K	김*아	2021.10.01
2	86부1297	마이티III3.5톤(터보)	지*현	2021.10.13
3	12나7707	익스플로러	김*훈	2021.10.20
4	41너4286	프라이드	김*정	2021.10.27
5	49무8641	오피러스	이*희	2021.10.2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91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로 신규출점 억제를 유도하여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지속적으로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 (안 제3조)
- 시행일을 2022년 2월 1일로 하여 혼란을 방지 (안 부칙 제1조)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자는 5년간 유예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재산권을 보호 (안 부칙 제2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435, 팩스 032-560-27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 제안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로 신규출점 억제를 유도하여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지속적으로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 (안 제3조)
- 나. 시행일을 2022년 2월 1일로 하여 혼란을 방지 (안 부칙 제1조)
- 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자는 5년간 유예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재산권을 보호 (안 부칙 제2조)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0미터”를 “100미터”로 변경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2.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 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u>50미터</u>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 ----- -----<u>100미터</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붙임1] 규제영향 분석서

##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강화기준 규제 적정성 심사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준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명 : 경제정책과</li> <li>○ 작성자 : 경제정책과장 최형순</li> </ul>						
4. 근거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사업법」 제16조</li> <li>·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li> </ul>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구분 : 강화</li> <li>○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간 비 용 : 비용발생 없음</li> <li>- 피 규 제 자 수 : 서구 관내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출점하고자 하는 자, 담배소매업을 이미 영위 중인 자</li> <li>- 경쟁 제한적 요소 :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방지 및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li> <li>- 국제기준 : 해당 없음</li> </ul> </li> </ul>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종전 규제 내용			변경 규제 내용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b>50미터 이상</b>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b>100미터 이상</b>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제한거리를 종전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함.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내용

- 국내 편의점 과당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영환경 개선 필요
-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지속적으로 예방

#### 나. 문제발생의 원인

- 국내편의점 수는 2008년 11,802개에서 2019년 45,193개로 4배 이상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과당출점 경쟁으로 골목상권의 영업 여건이 악화
- 관내 편의점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돌입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제한거리가 50m에 불과하기 때문임

####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편의점·골목슈퍼는 담배소매권을 전제로 출점되는 경우가 많고, 담배소매인 제한거리인 50m마다 추가 출점되는 등 점포 과밀화 상태이므로 골목상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정기준 강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함

#### 라. 규제의 목표설정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신규출점 억제를 유도하여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신규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출점하고자 하는 자들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

- 본 규제는 기술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제한 강화에 대한 규제로서 서울시는 현재 모든 자치구가 100미터로 확대되었으므로 실현 가능성 있음

###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기존 규제를 강화함

#### 나.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함

####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 기존 유사한 규제 없음

####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본 규제사항으로 새로운 내용의 다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가능성 없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의 사회적 소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

####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 제한 강화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편익 발생 효과가 큼

###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 관련 법 범위 내에서 지정된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였음

####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 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 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 존속 기한 : 규칙 폐지시까지 존속

**7. 규제 집행의 적정성(조직·인력·예산)**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별도의 조직·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나. 기존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함

**8.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자 체 심 사 의 건

## □ 규제 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강화기준 규제 적정성 심사

## □ 규제근거 및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 규제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과당출점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경영환경 개선 및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내 용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기준 확대 : 100미터 이상
  - 기존 담배소매인 유예기간 : 5년
  - 개정규칙 시행일 : 2022. 2. 1.

## □ 자체심사의견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적정거리 도출 연구용역을 통한 담배소매점 경영주 설문 조사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편의점 간 과당경쟁 피해사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등 관내 소매점포 간 합리적인 거리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를 통해 신규출점 억제를 유도하여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의견 제출자	설치 장소	거리	제출의견
			해당없음.

 이해관계인 의견

#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b>실·국(군·구)별 의견</b>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